

거창군 기업 및 투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. 10. 02.

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8. 10. 16(제2차 산업건설위원회)

라. 의안번호 : 제2008 - 41호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개정이유

- 국내·외 투자사업 및 기업유치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상위법령 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국내·외 투자사업 및 기업유치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근거 마련
 - “기반시설”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2조제16호 신설)
 - 기반시설 지원근거 마련(안 제21조의2 신설)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조문번호 변경
- 인용하는 관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
-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
-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」에 맞춰 용어순화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이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고도화를 위하여 국내·외 투자사업 및 기업유치에 대한 기반시설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과 용어를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의2(기반시설 사업지원 등) 조에서 “군내 입주하는 국내·외국인의 투자사업 및 기업 중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지원”하는 내용의 신설조항으로, 「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조례」를 2000. 11. 15. 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 해 오고 있으나,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투자사업이나 기업유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급변하는 기업투자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없음

5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